

16~17세기 ‘서원제도’ 보급 과정

安多美*

- | | |
|---------------------|-----------------------|
| I. 머리말 | IV. 임란 이후 ‘서원제도’ 정비사업 |
| II. ‘서원제도’ 시행 배경 | V. 맺음말 |
| III. ‘사액제도’의 도입과 효과 | |

• 국문초록

‘향풍 교화’ 공간인 ‘사우’와 ‘인재 양성’ 공간인 ‘서원’을 모두 갖춘 조선의 ‘서원 제도’는 향촌 사회에 ‘성리학적 이데올로기 보급’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획된’ 국가 제도였다. 조선 시대 ‘서원제도’는 ‘향촌교화 시스템’과 ‘인재선별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서원제도’에서 ‘선별’된 주체는 ‘지방 양반’들이었다. 조선 정부는 이른바 ‘지방 정부’를 통해 국가 정책 이념을 향촌 사회에 보급하여, ‘향촌 사회 질서 정립’이라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방 양반들을 ‘서원제도’를 통해 ‘선별’하였다. 이렇게 ‘선별된 지방 양반’들은 ‘자율성’을 보장받았고, 이를 토대로 향촌 사회에서 ‘서원제도’의 운영권을 ‘위임’ 받았다.

조선 시대 서원 시스템은 국가 시스템 중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법’에 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서원제도’는 국가 정책 방향에 따라 ‘유동성’을 가지게 되었다. ‘서원제도’가 가지는 ‘유동성’은 ‘사회적 계층’이었던 지방 양반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지방 양반들은 ‘사회적 지위’를 고수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서원제도’ 속에서 일련의 노력을 진행하였다. 이것은 지방 양반들의 ‘서원 운동’이라고 할 수 있었다. 지방 양반들의 ‘서원 운동’이 격렬해지면서 조선 정부가 시행하던 서원 정책은 ‘서원 남설 현상’과 ‘제향 인물 중심의 사당화 현상’이라는 두 가지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과 박사수료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두 문제는 ‘서원제도’가 시행되던 때부터 조금씩 제기되었으며, 17세기 무렵이 되면서 불어지기 시작하였다.

주제어 : 書院, 서원제도, 향촌교화, 지방 양반, 서원 운동

I. 머리말

조선 시대 '서원제도'는 朱熹(1130~1200, 이하 주자)가 복원한 白鹿洞書院의 제도를 모티브로 시행되었다고 알려졌다. 주자의 '백록동서원 제도'가 구현된 곳은 豐基(현 영주군)에 건립된 白雲洞書院이다. 조선 시대 '서원제도'의 운영 주체는 지방 양반들이었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서원은 지방 양반들을 교화하고 교육하는 '私學'이었으며, 지방 양반들의 '자치성'에 기반을 두고 운영되었다. 기존 연구들은 조선 시대 서원의 출발점을 中宗·明宗代에 일어난 '士林禍(己卯, 乙巳)'에서 찾고 있다. '사화'로 인해 중앙 정계에서 밀려난 이른바 '士林派'¹⁾가 향촌 사회에 기반을 두고 성장하면서, 서원을 건립하고 이곳을 자신들의 정권 재창출 거점, 교학 기구 및 향촌 중심기구로 발전시켰다는 것이다.²⁾ 이 연구들은 조선 시대 서원의 출발점을 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 그러나 '사림파'의 실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서원이 '사림파'의 정권 재창출의 거점이라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는 논문이 발표되었다.³⁾

이 논문에서는 지역 양반, 품관으로서 '사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백운동서원 건립 배경과 서원건립에 대한 풍기 지역 '사림(양반, 품관)'의 반응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초기 서원의 성립 배경을 재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당시 풍기군수였던 周世鵬(1495~1554)이 '향촌교화'를 목적으로 서원을 건립하였으며, 留鄕所와 司馬所를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풍기 '사림(양반, 품관)'들은 오히려 서원건립에 대해

-
- 1) '사림파'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몇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조선 시대 '사림'이라는 말이 어떻게, 어떠한 역사적 상황에서 쓰이기 시작했으며, 또 구체적으로 어느 개인, 어느 집단이 '사림'이라는 용어로 지칭되었는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어느 개인, 어느 집단이 '사림'이라고 지칭되었을 때 이들의 특성은 무엇이었는가의 문제이다. 세 번째는 사림의 구성 문제로, 사림을 형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출신 지역, 사회적 배경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괄적 검토는 Edward W. Wagner, 「李朝 士林問題에 관한 再檢討」, 『전북사학』 4, 전북대 사학회, 1980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 2) 사림과 관련된 서원의 성립 배경에 관한 연구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柳洪烈, 「朝監祠廟發生에 對한 一考察」, 『진단학보』 5, 진단학회, 1936; 최완기, 「조선조 서원 성립의 제문제」, 『한국사론』 8, 국사편찬위원회, 1980; 민병하, 「조선 시대의 서원 교육」, 『대동문화연구』 17,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83; 이태진, 「士林과 書院」, 『한국사』 12, 국사편찬위원회, 1984.
 - 3) 윤희면, 「백운동서원의 설립과 풍기 사림」, 『조선 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부정적이었음을 지적하였다. 이것을 통해 이 연구에서는 서원건립의 목적은 지방관의 ‘향촌교화’에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 논문은 서원건립의 주체를 단순히 사람들 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지방관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 역시 기존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서원은 지방 ‘사람(양반, 품관)’의 거점으로 역할을 했고, 이 과정에서 지방관과 ‘대립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비교적 최근에는 15세기 말부터 16세기, 국가의 서원폐단에 대한 대응책과 賜額의 목적에 초점을 두고 진행한 연구도 발표되었다.⁴⁾ 이 연구에서는 公과 私의 개념을 가지고 15세기 말부터 존재한 서원의 폐단 문제를 국가의 공적 인식과 향촌 土類의 사적 인식의 충돌로 인한 결과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는 기존에 서원 연구들이 지방 ‘사람’들의 입장에서 서원제도를 이해했던 것에서 나아가 국가의 입장에서 서원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 역시 기존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서원과 국가의 입장을 ‘대립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지금까지 조선 시대 서원 성립 배경을 밝히는 일련의 연구는 모두 백록동서원 제도를 모티브로 서원이 건립되었으며, 서원은 지방 양반들의 ‘자치기구’였음에 동의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통설로 받아들여져 16세기 이후 서원 연구에 중요한 배경지식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런 연구들은 몇 가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가장 먼저 중국에서 이른바 ‘수입’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서원’인지, ‘서원제도’인지에 대한 모호함이다. 이 점은 좀 더 명확할 필요가 있는데, 단순히 건물을 모티브로 한 것과 ‘제도’를 모티브로 한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만약 ‘제도’가 ‘수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면,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서원제도’가 어떻게 조선에 정착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기존 연구들은 서원이 보급될 수 있었던 이유를 退溪 李滉(1501~1570)의 ‘서원 보급 운동’에서 찾았다.⁵⁾ 그러나 하나의 ‘제

4) 신동훈, 「16세기 서원 사액과 국가의 정책」, 『역사와 현실』 98, 한국역사연구회, 2015.

5) 이황의 ‘서원건립 운동’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문들이 있다. 정만조, 「退溪學派의 書院(敎育)論」, 『남명학연구』 9,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1999; 조준호, 「退溪 李滉의 서원건립 활동과 서원론의 실현」, 『역사문화논총』 2, 역사문화연구소, 2006; 이수환, 「영남지역 퇴계 문인의 서원건립과 교육 활동」, 『국학연구』 18, 한국국학진흥원, 2011; 김형찬, 「退溪의 書院觀에 대한 철학적 해명」, 『退溪學報』 136, 퇴계학연구원, 2014; 권시용, 「16~17세기 초반 퇴계 문인의 서원 건립 활동」, 『한국서원

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의 입장이 분명해야 했기 때문에 '서원제도 보급'에서 조선 정부 입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조선 정부와 서원에 속한 지방 양반들이 서로 '대립 관계'였다고 하는 '이분법적' 구분에 관한 점이다. 이 문제는 '서원제도'가 지방 양반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그들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자율성'과 '국가'가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어야 할지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예컨대, '서원제도'의 운영권이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운영권을 지방 양반들에게 부여해 준 대상은 조선 정부였다. 또, 지방 양반들은 '향촌 사회 질서 정립'의 임무를 책임지고 있었으며 그것은 '자율성'에 기반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방 양반들에게 '향촌 사회 질서 정립'이라는 책임을 부여해 준 대상은 조선 정부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16~17세기에 걸친 조선 정부의 '서원제도' 보급 과정을 재검토해 보려 한다. 먼저 이 글에서는 '서원 보급'이란 용어 대신 '서원제도 보급'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다. 조선 정부는 국초부터 당면한 정책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서원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서원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국가 시스템의 일부로서 자리 잡아갔다. 본 글에서는 먼저 '서원제도' 시행 배경과 과정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서원제도'를 향촌 사회로 보급하기 위해 조선 정부가 취했던 정책 방향에 대해 이해해 보려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의 과정들이 16세기 이후 어떤 결과를 낳았으며 여기에 대한 조선 정부의 대응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통해 이후 18~19세기 조선 정부의 '서원 정책'이 독특한 현상이 아니라, '서원제도 보급'이라는 연속성 속에서 진행된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⁶⁾

학보』 8, 한국서원학회, 2019; 채광수, 「퇴계문인의 서원 보급 활동」, 『민족문화논총』 73,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19.

6) 이 글에서는 먼저 조선 시대 '서원제도' 시행과 정비사업 등을 통해 향촌 사회에 '서원제도'가 정착해 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후 18~19세기에 거쳐 조선 정부의 '서원 정책'과 이것이 재정비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으로 다룰 예정이다.

II. ‘서원제도’ 시행 배경

조선 정부는 ‘성리학적 이데올로기’에 입각하여 사회 질서를 정비해 나가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위해 정부 정책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인재들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했는데, 이때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書院이었다. 세종 즉위년(1418) 11월에 정부는 각 지방관에게 향교의生徒 중에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하여 서원을 통해 양성하도록 권장하였다.⁷⁾ 조선 정부는 향교 생도로 입학한 양인 자제들 중에서 生員·進士가 될 수 있는 ‘양반 자제’를 서원을 통해 별도로 ‘선별’하여, 국가 施策을 구현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하고자 하였다.

국초부터 시행된 조선 정부의 서원 정책이 좀 더 구체적으로 구현된 것은 중종 36년(1543)을 기점으로 해서였다. 중종 36년 정월부터 4월까지 ‘향촌 교화’와 ‘풍속의 개선’을 요구하는 요지의 상소들이 빗발치기 시작했다.⁸⁾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조선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향풍 교화 작업’이었다. 그리고 이 작업을 위해서 조선 정부는 정부 정책을 잘 이해하고, 자신들을 보좌해 줄 만큼 명망이 있으면서, 吏民들을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을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필요에 부응하여 대안을 제시한 사람은 行副司果 魚得江(1470~1550)이었다.

중종 37년(1542)에 어득강은 중국의 여러 교육 기관들을 열거하면서, 그중에서도 주자의 白鹿洞書院과 같은 기구를 우리 州郡에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⁹⁾ 어득강이 제안한 서원의 모습은 국초부터 조선 정부가 추진해 오던 서원정책과 대체로 일치하였다. 그렇다면 어득강이 제안한 서원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먼저 어득강은 옛 寺刹의 공간을 서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어득강이 사찰 공간을 활용하려 했던 것은

7) 『세종실록』 권2, 즉위년, 11월 기유, “學校, 風化之源, 內設成均·五部學堂, 外設鄉校, 勸勉訓誨, 無所不至, 而成均受學者, 尙未滿額, 意者教養之方, 未盡其術歟? 人之趨向, 他有所好歟? 其振起作成之術, 政府六曹講求以聞, 且鄉校生徒, 雖有志學者, 所在守令, 如損分書役, 應對賓客等事, 無時使喚, 以致廢業, 自今一禁, 其有儒士私置書院, 教誨生徒者, 啓聞褒賞.”

8) 『중종실록』 권94, 36년, 2월 병자; 『중종실록』 권94, 36년, 2월 정축; 『중종실록』 권94, 36년 3월 갑신.

9) 『중종실록』 권98, 37년, 7월 을해, “漢之鄭玄. 聚徒教授, 隋之王通, 講學河汾, 唐之李渤, 爲南唐, 白鹿洞主, 學者雲集, 至趙末初, 其徒尙數千人, 宋帝賜九經以獎之, 朱周張程朱, 各有門徒, 其出於門者, 皆名公碩儒, 青出於藍, 李公擇, 貯山房萬卷之書, 以與學者共之, 朱熹建武夷精舍, 修白鹿書院此道不行於東國, 遐裔之儒, 何所問業.”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하고자 했던 실용적인 목적일 수도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성리학적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사회 질서를 교화하고자 했던 중앙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상징성이 내포되어 있었다.

이렇게 건립된 서원에서 교육할 대상은 각 도내 생원·진사를 포함한 ‘幼學’들이었다. 어득강은 ‘유학’을 교육하되, 이들을 교육을 관리하고 시험할 관리자로 官秩이 높은 지방관을 중심으로 교수 1명, 현감 1명을 둘 것을 제안했다.¹⁰⁾ 서원을 통해 선별된 ‘유학’들은 매년 시험을 통해 차등 있게 등수를 매겨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과 관련한 특혜를 부여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 그는 이렇게 건립된 서원을 운영할 비용은 각 지방에 지급한 學田에서 일부 충당할 것을 제안했다.¹¹⁾

어득강이 제안한 내용은 조선정부가 국초부터 구상해 온 서원정책과 상당 부분 일치했다. 특히 각 지역에서 생원·진사를 포함한 ‘幼學’들을 선별하여 시험을 보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과거 시험 자격에 특혜를 주자는 제안은 국초에 ‘성균관 입학 자격자를 선별’하려 했던 조선정부의 서원정책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중앙정부는 어득강의 제안을 받아들여 가장 먼저 豊基郡에서 그것을 실현하도록 권장하였는데, 이 임무를 담당할 사람은 豊基郡守 周世鵬(1495~1554)이었다. 이른바 ‘丁丑之亂’이라고 불리는 사건 이후 順興府의 일부가 풍기군에 합속되면서, 惡鄉으로 낙인찍혀 정부에 대한 반감이 심한 곳으로 분류되었다. 풍기군의 풍속이 어지럽다는 점은 이미 중종 32년(1538)부터 지적되었다. 실제로 중종 32년 1월에는 사간원에서 풍기군수 安愷가 성품이 貪汚하고, 백성을 侵虐 하는데, 監司 李賢輔(1467~1555)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사회 기강이 해이해짐이 날로 심해지고 있으니 둘을 파직할 것을 상소한 일이 있었다.¹²⁾ 여기에 중종 35년(1540)부터 계속된 기근은 중종 37(1542)년이 되면 예안, 성주 등 경상 상도 지역을 휩쓸었다.¹³⁾

10) 『중종실록』 98권, 37년, 7월 을해, “慶尙全羅忠淸江原四道, 士尙詩書, 臣意忠淸江原全羅, 各一道中央慶尙左右道, 各得一大寺刹, 聚道內名儒, 勿論生員進士, 歲以四仲之月, 分上下齋, 讀書年例, 慶尙道以州郡學田之出, 爲六月都會及冬三朔會讀之需, 今可移之爲四仲之資, 官補不足, 常養四五十人或二三十人, 多少不拘此數, 以秩高守令爲試官, 率二教授或縣監, 備三員勸課製述, 計其分數, 生員進士, 於文科館漢鄉試給分有差, 幼學直赴生員進士覆試, 如此則士皆樂趣, 不勸而勤矣.”

11) 어득강의 제안은 이후 조선의 서원제도에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지방관이 유학들을 시험 보게 하는 考講 제도, 學田의 일부를 지방재정으로 보충해주자는 제안 등은 이후 서원제도의 주요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된다.

12) 『중종실록』 권83, 32년, 1월 병신.

풍기군의 이런 상황은 중앙정부로서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중앙 정부는 종종 36년에 풍기군수로 주세붕을 임명하고 풍기의 향풍 교화를 책임지도록 위임하였다. 풍기군수로 임명된 주세붕에게 주어진 임무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향풍 교화’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새로운 계층을 ‘선별’하는 작업이었다. 주세붕은 가장 먼저 ‘향풍 교화’를 위해 梅軒 安珦(1243~1306)의 초상을 모시는 祠宇를 건립하였다.¹⁴⁾ 그가 사우를 건립한 장소는 안향이 공부를 하던 宿水寺 터였다.¹⁵⁾ 주세붕은 사우 건립에서 그치지 않고, 이듬해인 종종 38년(1543)에는 고을 북쪽에 學舍를 사당 앞으로 移建하였다.¹⁶⁾ 그리고 이곳을 백운동서원이라고 하였다.

이로써 주세붕은 ‘사회적 교화 기능’을 가지고 있던 ‘사우’와 ‘인재선별 기구’였던 ‘서원’을 합사하여, ‘교화’와 ‘인재선별’ 기구를 겸비한 ‘지방통치 기구’로서 서원을 탄생시켰다. 주세붕이 ‘지방통치 기구’로서 서원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은 주세붕 개인의 노력 때문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서원 정책’이 뒷받침해 준 덕분이었다. 종종 37년에 어득강은 자신이 제안한 서원제도를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전 지역에서 시행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고, 중앙정부가 이를 수용한 결과가 종종 38년 완공된 ‘백운동서원’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건립된 서원의 운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을까? 조선 정부는 국초부터 서원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을 지방관에게 위임하였다. 백운동서원 역시 마찬가지로 운영되었다. 서원을 건립한 주세붕은 두 가지 방향으로 재원을 충당하였다. 하나는 지방재정의 일부인 屬公田의 일부를 통해 서원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였다. 다른 하나는 서원을 통해 선별할 ‘지방 양반’들의 원조 및 기부를 통해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였다. 따라서 주세붕은 가장 먼저 서원의 운영을 위임할 ‘지방

13) 『중종실록』 권97, 37년, 1월 계사; 『중종실록』 권97, 37년, 3월 기해.

14) 『중종실록』 권95, 36년, 5월 정미.

15) 주세붕은 어득강이 제안한 것처럼 옛 사찰 공간을 활용하여, 서원을 건립하려 하였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이점이 있었다. 물론, 알고 그런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숙수사 터에서는 구리 등이 발견되어 서원건립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비용이 충당되었다(『중종실록』 권95, 36년, 5월 정미). 두 번째는 본래 있던 숙수사 터전을 그대로 활용한다는 실용적인 측면도 있었고, 숙수사 건립에 참여했던 승려들을 서원건립 役事 과정에 차출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었다.

16) 周世鵬, 『武陵雜稿』 권7(原集), 「竹溪志序」, “嘉靖辛丑秋七月戊子, 余到豐城, 是年大旱, 明年壬寅大飢, 其年, 立晦軒祠堂於白雲洞, 又明年癸卯, 移建學舍於郡北, 別立書院於晦軒廟前.”

양반'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서원을 통해 선별된 지방 양반들은 '서원 운영'에 대한 임무를 책임질 뿐 아니라, 지방관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통해 향촌 사회 질서 정립을 위해 이바지해야 할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서원을 통해 선별할 지방 양반들은 지방관과 밀접한 유대관계를 형성해야 했으며, 중앙정부의 정책을 이해할 만큼의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했고, 무엇보다 향촌민들에게 '명망'이 있는 계층이어야 했다. 주세붕이 서원을 건립하자 풍기에서 유향소와 사마소를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세력들은 그가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근이 들었음에도 무리해서 건물을 짓는다고 비난하였다.¹⁷⁾ 이들은 주로 吏民들로 분류되는 계층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들은 군수가 건립한 서원을 정치 기구로 파악하고, 자신들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 목적으로 서원이 건립되었다고 생각했다.¹⁸⁾

반면, 주세붕의 서원건립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사람들은 제향 인물의 후손들도 있었지만, 풍기지방 進士인 黃彬이 가장 대표적 인물이었다. 정부가 주목한 새로운 계층은 황빈과 같은 지방 양반들이었다. 조선정부가 주목한 지방 양반들은 대체로 향촌 사회에서 어느 정도 명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서원 정책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생원·진사의 자격을 갖추 수 있는 幼學 계층이 상당수였다. 조선정부는 황빈과 같은 사람들을 새롭게 '선별'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향촌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런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선별 대상자들에게 그들이 운영할 서원제도의 유리한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갔는데, 그 중 하나가 '자율성 보장'이라는 것이었다.¹⁹⁾

조선 정부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선전은 큰 효과를 발휘하였다. 그 결과 15세기 이후가 되면 서원제도에 부정적이던 지방 양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서원제도 안으로 들어오는 현상들이 포착된다. 이런 변화에 좀 더 활기를 넣어 준 것은 명종 3년

17) 周世鵬, 『武陵雜稿』 권7(原集), 「竹溪志序」, “或曰, 甚矣, 子之迂也, 學宮則然矣, 至於文成公廟與書院, 獨不可以已乎. 公既從祀國學, 達于州縣何必立廟, 既有學校, 何必別立書院, 當飢饉不時, 居湫賤不信, 我國舊無祠若書院, 欲由我而始, 不亦近於汰乎.”

18) 윤희면, 「백운동서원의 설립과 풍기 사람」, 『조선 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19) 여기서 말하는 조선정부가 '서원제도'를 통해 부여한 '자율성'이란 구체적으로 상정할 수 없지만, 서원제도에 대한 운영의 자율성, 후술하겠지만 향촌사회 질서 재정립에 관한 위임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1518)에 풍기군수로 부임한 退溪 李滉(1501~1570)의 ‘賜額제도’였다.

요컨대, 조선의 서원제도는 국초 성리학 기반의 질서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국가 정책 속에서 자리 잡아갔다. 이후 종종 연간이 되면, 향풍 교화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게 되면서, 정부는 서원제도를 활용해 향촌교화를 하려고 시도하였다. 그 첫 번째 장소가 풍기군수 주세붕의 주도로 건립된 백운동서원이었다. 정부는 백운동서원을 통해 성리학을 기반으로 향촌 사회 질서를 확립해 갈 인재들을 선별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서원제도’를 운영할 인재를 선발하는 한편 ‘자율성 보장’이라는 정책 방향을 표방하여, 서원제도가 지방 양반들에게 유리한 제도임을 선전했다.

Ⅲ. ‘사액제도’의 도입과 효과

이황은 풍기군수로 부임하고 이듬해인 명종 4년(1519)에 경상도 관찰사 沈通源(1499~?)을 통해 백운동서원에 ‘賜額’과 서적·토지·노비를 하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다.²⁰⁾ 그는 사액 청원 상소를 통해 ‘서원제도’가 운영되어야 할 궁극적인 목표를 ‘위로부터 교화’를 통한 ‘국왕의 교화’의 보급을 위한 것이며, 이것을 위해서는 土風을 교화해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²¹⁾ 이황은 ‘사풍 교화’의 담당자는 方伯(관찰사)이나 수령이 아니라 국왕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서원에 대한 사액을 요청하였다.

사액 요청 상소에도 드러나다시피, 이황이 추구한 서원제도의 모습은 중앙정부의 서원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원을 통해 지방 양반들을 교화하고, 이렇게 교화된 지방 양반들이 국왕 교화정책을 보급한다는 이황의 구상은 ‘서원제도’를 통해 ‘성리학적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지방 양반들을 ‘선별’하고, 이렇게 ‘선별된’ 지방 양반들을 통해 향촌사회 교화를 위임한다는 중앙정부의 서원정책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황은 서적, 토지, 노비를 하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이것은

20) 李滉, 『退溪集』 권9, 「上沈方伯(通源○己酉)」.

21) 李滉, 『退溪集』 권9, 「上沈方伯(通源○己酉)」, “滉竊見今之國學, 固爲賢士所關, 若夫郡縣之學, 則徒設文具, 教方大壞. …… 惟有書院之教, 感興於今日, 則庶可以救學政之缺, 學者有所依歸, 土風從而丕變, 習俗日美, 而王化可成.”

물론 백록동서원 제도를 모방하려는 개인의 의지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지방재정으로만 충당하기 어려웠던 서원 재정을 중앙 정부로부터 원조 받기 위한 지방관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항의 요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정부는 백운동서원에 '紹修'라는 현판을 하사하고, 서책을 내려주는 일에는 찬성했으나, 토지와 노비를 내려주는 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중앙정부의 입장은 이미 주세붕이 마련한 田糧과 도구가 충분하고 使喚할 사람을 마련하기 충분한데, 굳이 토지와 노비를 내려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²²⁾ 정부의 이런 입장은 적어도 17세기 이전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백운동서원(이하 소수서원) 이후 사액을 받은 영천의 臨臯書院,²³⁾ 해주의 文憲書院,²⁴⁾ 함양의 濫溪書院²⁵⁾ 모두 소수서원의 사례에 근거하여 사액과 서책을 내려주었으나, 노비와 토지를 하사하는 일은 불허하였다.²⁶⁾

중앙정부는 서원을 '지방통치 보조기구'로 보았기 때문에 '서원제도' 운용에 드는 비용은 지방재정으로 충당하도록 권장하였다. 실제로 소수서원의 경우 명종 1년(1546)에 부임한 경상도 관찰사 安鉉(1501~1560)과 풍기군수 柳敬長이 「斯文立議」를 마련하여 서원의 享祀부터 學田과 서적의 운영 및 관리, 노비와 院屬의 관리 등 서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방안을 마련하였다.²⁷⁾ 이렇게 '입의'를 세우고, 재정을

22) 『명종실록』 권10, 5년, 2월 병오.

23) 임고서원은 圃隱 鄭夢周(1337~1392)를 주향으로 한 서원이었다. 임고서원의 役事는 명종 8년(1553)에 生員 金應生(1496~1555), 幼學 鄭允良, 進士 盧遂(1515~?) 등이 永川郡守 李義의 도움을 받아 시작하였다(『명종실록』 권16, 9년, 6월 계미).

24) 문헌서원의 원래 이름은 首陽書院으로 명종 4년(1549) 가을에 황해도 관찰사가 된 주세붕이 향촌 교화를 목적으로 이듬해인 명종 5년에 완공한 서원이었다. 주세붕은 향교 서쪽에 터를 닦고 崔沖(984~1068)의 사당을 옮겨오고, 서재를 지어 서원을 세우고, 田民을 마련하고 주방과 창고를 세워 해주 지방 諸生들을 모이게 했다(『명종실록』 권18, 10년, 2월 경인).

25) 남계서원은 一蠹 鄭汝昌(1450~1504)을 제향한 서원으로, 명종 7년(1552)에 함양지방 양반인 介庵 姜翼(1523~1567) 등이 건립 결의를 하였다(송준식, 「남명학과 서원건립 운동」, 『남명학연구』 15, 남명학연구소, 2003, 236면). 함양지방 양반들이 자발적으로 건립논의에 동참한 것으로 보이지만, 남계서원의 건립 배경 이면에는 土豪와 品官들의 侵虐 문제가 있었다(『명종실록』 12권, 6년 11월 2일 병술).

26) 『명종실록』 권17, 9년, 11월 기해; 『명종실록』 권18, 10년, 2월 경인; 『명종실록』 권33, 21년, 6월 갑술.

27) 斯文立議는 『紹修書院謄錄』에 실려 있는데, 명종 1년(1546) 2월 5일부터 현종 11년(1670) 7월

마련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관들은 ‘서원제도’ 운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수서원 이후 건립된 서원들에 대해 지방 정부는 적극적으로 사액 요청을 하는데,²⁸⁾ 이것은 단순히 서원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도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토지와 노비를 하사하는 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소수서원의 사례에 따라 서책과 현판을 하사하는 일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정부는 왜 현판과 서책을 하사하는 일에 적극적이었을까? 서책과 현판을 하사하는 일은 중앙정부에게 대략 두 가지 점에서 의미를 주었다. 하나는 국왕의 권위를 향촌 사회에 보여주는 효과를 가져왔고, 다른 하나는 서원제도에 대한 선전효과를 가져와 서원제도가 향촌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御筆로 쓰인 현판이 걸린다는 것은 지방 양반들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 어필 현판은 국왕이 직접 그 건물에 대해 인증을 해 준다는 일종에 ‘공인인증 시스템’과 같았기 때문이었다. 이런 상징성을 가진 어필 현판은 향촌 사회에 ‘서원제도’를 선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인증서’였다. 특히 중앙정부는 ‘자율성 보장’이라는 부분을 서원의 이점으로 선전하였는데, 여기에 어필 ‘인증서’까지 부여해 주어 지방 양반들에게 ‘서원제도’는 국가가 ‘합법적’으로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기구임을 ‘선전’하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서책도 현판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왔다. 정부에서 발행한 또는 정부에서 보관하고 있던 서책들을 선별하여 하사해 준다는 것은 국왕이 직접 지방 양반들의 양성 작업에 관여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4일까지 기록이 실려 있으며, 주로 1546~1547년에 집중적으로 기록이 남아 있다. ‘사문입의’는 경상도관찰사 安玪, 전 시간 黃孝恭, 도사 鄭俊, 군수 柳敬長, 전 정랑 安公信, 差使員 黃俊良 등 5인의 결의로 「順興文成公廟白雲書院斯文立議」라는 제목으로 확정되었다.

28) 실례로 임고서원의 경우 영천군수 이의가 명종 9년(1554) 3월에 경상도 관찰사 鄭彦慈(1498~1556)에게 가묘의 春秋祭享과 유생들을 먹일 米麴, 서책, 支供할 노비 등을 소수서원의 예에 따라 내려 줄 것을 牒呈하였다(김학수, 「조선후기 영천지역 사림과 임고서원」, 『포은학연구』 6, 포은학회, 2010). 또, 문헌서원의 사액 과정에서 지방관의 역할은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임고서원의 사액에 근거하여 사액 소청이 올라왔고, 이것이 예조에 올려 진 경위 등으로 보아 당시 황해도 관찰사였던 南應雲(1509~1587)의 역할이 컸음을 추정할 수 있다. 남계서원의 사액은 명종 19년(1564)에 함양 군수로 부임한 金宇弘이 2년 후인 명종 21년(1566)에 경상도 관찰사 姜士尙을 통해 사액 청원 상소를 올리면서 비로소 이루어졌다.

서책을 하사하는 것은 ‘선전효과’ 뿐만 아니라, ‘서원제도’를 활용한 중앙정부의 정치적 의도를 가장 잘 완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중앙정부가 소수서원에 하사해 준 서책은 『四書五經』과 『性理大全』이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²⁹⁾ 이 중에서도 특히 『성리대전』은 원래 명나라 영락 13년(1415)에 완성된 것으로 송나라 때 성리학을 집대성한 책이다. 정부가 많은 책 중에서 『성리대전』을 선별하여 하사한 것은 ‘서원제도’를 통해 조선 정부가 이루고자 했던 궁극적인 목표가 ‘성리학적 이데올로기 보급’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조선 정부가 ‘성리학적 이데올로기 보급’을 위해 서원제도를 활용하려 했다는 점은 이황이 작성한 『伊山書院院規』에서도 엿볼 수 있다.³⁰⁾ 이산서원 원규의 강학 부분에는 기본 텍스트가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규정된 기본 텍스트는 『사서오경』과 『小學』, 『家禮』였다.³¹⁾ 이 중에서 『소학』이 기본 텍스트로 지정된 것은 명종 6년(1521) 11월에 향촌 사회 교화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 유학에게 『소학』을 권장하도록 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았다.³²⁾

정부 차원에서 권장되던 『소학』은 己卯士禍 이후 일종에 ‘禁書’로 인식되기도 했지만,³³⁾ 『소학』 텍스트에 정리된 ‘성리학적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실천적 내용은 조선정부의 ‘사회질서 체계 정립 작업’의 주요 기틀이 되었다. 그리고 ‘성리학적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사회질서 체계 정립’을 위해 조선정부가 주목한 것은 『소학』의 내용 중에서도 『呂氏鄉約』 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³⁴⁾ 『향약』은 성리학적 이데

29) 임고서원, 문헌서원, 남계서원 역시 소수서원의 사례 의거하여 서책을 하사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서오경』과 『성리대전』 등 성리학을 가장 잘 정리해 놓은 서책을 선별하여 하사했을 가능성이 컸다.

30) 이황이 작성한 이산서원 원규는 栗谷 李珥(1536~1584)의 隱屏精舍 學規와 함께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원규의 典範이 되었다. 이황의 문인들은 도산서원을 건립한 이후에도 따로 원규를 작성하지 않고, ‘이산서원 원규’를 기준으로 서원을 운영하였다(김종석, 『陶山書院의 이념과 그 전개』, 『안동학연구』 11, 국학진흥원, 2012, 10~13면).

31) 『退溪集』 권41, 『伊山院規』, “諸生讀書, 以四書五經爲本原, 小學家禮爲門戶.”

32) 『명종실록』 권12, 6년, 11월 병술.

33) 윤인숙, 『조선전기의 사람과 〈소학〉』, 역사비평사, 2016, 참조.

34) 실례로 중종 12년(1517)에는 조선정부는 경상도 관찰사 김안국의 제안에 따라 각 지방 정부에 『여씨향약』을 인출하여 廣布 할 것을 명령하였다(『중종실록』 27권, 12년, 3월, 경인). 이후 선조 4년(1571)에 예조에서 黃億의 상소를 회계하여 『여씨향약』을 시행할 것을 회계하였다(『선조실록』 5권, 4년 2월 경신). 또, 1593년 이후 작성된 檜淵書院 「月朝約會儀」에는 ‘월식강회계’ 때

올로기를 기반으로 지켜야 할 규칙들을 정리한 텍스트였다. 조선 정부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향약』을 인쇄하여 보급한 것은 ‘성리학적 이데올로기의 보급’이라는 정부의 궁극적 목표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점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부분은 정부가 직접 『향약』을 반포하고 시행하여 국가의 규율로 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앙정부는 『향약』을 인쇄하여 이것을 지방 양반들에게 읽도록 권장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지방 양반들을 교화하는 목적을 드러낸 것일 뿐 아니라, ‘국왕의 교화’를 보급할 사람들은 ‘지방 양반’들이라는 조선 정부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향약』과 마찬가지로 조선 정부가 지방 양반들에게 ‘성리학적 이데올로기’를 보급하기 위해 활용했던 것은 제향 인물이었다. 서원의 제향 인물은 사액서원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실례로 명종 13년(1558)에 영천(영주) 군수 安瑞의 주도로 창건된 이산서원³⁵⁾은 건립 당시 제향 인물이 정해지지 않고, 강화 기능만 가지고 있었다.³⁶⁾ 이산서원은 선조 5년(1572)에 예안과 안동 지역에 각각 이황을 제향하는 서원이 건립되면서, 이황이 제향 인물로 정해졌다. 그리고 2년 후인 선조 7년(1574)에 이산서원은 사액을 받았다.³⁷⁾ 이처럼 제향 인물이 사액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은 강화 기능이 없던 ‘사우’가 사액을 통해 ‘서원제도’로 편입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단성의 道川書院, 성주의 川谷書院, 대구의 研經書院, 경주의 西岳書院, 청도 仙巖書院, 순천의 玉川書院, 제주의 橘林書院, 부여 義烈書院과 淸逸書院, 회덕 崇賢書院, 옥천 滄洲書院, 개성 文忠書院, 함흥 文會書院, 온성 忠谷書院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청도의 선암서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액을 통해

행할 규정들이 실려 있는데, 이 ‘계회입의’는 1583년에 寒岡 鄭述가 제정한 것으로 『여씨향약』을 모티브로 하였다(鄭述, 『寒岡先生文集』 권9, 「月朝約會儀」, 雜著). 이로 볼 때, 조선정부에서는 『소학』 자체를 부정적으로 본 것이 아니었으며, 필요에 따라 『소학』 텍스트의 내용을 선택적으로 활용했음을 알 수가 있다.

- 35) 『輿地圖書』 下, 「慶尙道」, 榮川(영주) 壇廟, 『한국사료총서』 20, “新增伊山書院嘉靖戊午郡守安瑞建書堂于郡東山伊里.”
- 36) 15~16세기에 이산서원과 마찬가지로 제향 인물이 지정되지 않았던 서원은 영천의 迂溪書院, 신령의 白鶴書院, 안동의 鏡光書院과 靑城書院이 있었다(『練藜室記述』(別集) 권4, 「祀典典故」; 『輿地圖書』 下, 「慶尙道」, 『한국사료총서』 20; 正祖編, 『俎豆錄』 下(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37) 『輿地圖書』 下, 「慶尙道」, 榮川(영주) 壇廟, 『한국사료총서』 20, “隆慶壬申享文純公李滉, 萬曆甲戌賜額.”

서원이 되었다.

제향 인물이 사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제향 인물을 누구로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방 양반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다. 그 결과 17세기 이후가 되면 제향 인물을 둘러싼 지방 양반들 사이의 논쟁 및 갈등 현상이 심각하게 드러났다. 예컨대, 천곡서원은 원래 명종 14년(1559)에 星州牧使 盧慶麟(1516~1568)이 고려의 유학자인 文烈公 李兆年(1269~1343)과 文忠公 李仁復(1308~1374)을 제향한 사우를 건립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寒暄堂 金宏弼(1454~1504)을 추가 從享하면서 延鳳書院이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인복의 초상에 불교를 상징하는 목주가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 제향 인물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났다.³⁸⁾ 연봉서원의 제향 인물 논란은 이조년과 이인복의 사당(忠賢祠)을 별도로 건립하고 제향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³⁹⁾

이처럼 사액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했던 제향 인물은 어떤 인물이 선정 되었을까? 소수서원 이후부터 적어도 17세기 이전까지 선정된 제향 인물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그 지역에 오래된 지방 양반들이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된 소수서원에 제향된 안향은 풍기에 기반을 둔 지방 양반이었다. 인종 1년(1544) 소수서원에 추가로 배향된 安軸(1282~1348) · 安輔(1302~1357) 형제 역시 지역에 연고를 가진 지방 양반이었다.⁴⁰⁾ 이외에도 정몽주는 영천의 임고서원과 개성의 崑陽書院에 제향되었는데, 영천과 개성은 모두 정몽주의 연고지였다.⁴¹⁾ 또, 함양 출신인 정여창은 남계서원에 제향되었으며, 이산서원에 제향된 이황은 처가가 영천(영주)이었다. 고려말 성리학자 禹倬(1262~1342)은 예안에 연고를 가지고

38) 이익, 『성호사설』 권24, 경사문.

39) 천곡서원과 같은 사례로는 태종 1년(1401)에 三憂堂 文益漸(1329~1398)을 주향으로 하여 정부 차원에서 건립한 道川祠가 있다. 도천사는 정조 11년(1787)에 사액 받아 도천서원이 되었다. 이때 원래 도천사에 제향되었던 문익점 이외에 淸香堂 李源(1501~1568), 竹閣 李光友(1529~1619), 東溪 權濤(1575~1644)의 추가 배향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었다.

40) 안축 · 안보 형제는 安碩의 아들로, 안석은 안향의 조카이다. 안축 형제를 비롯한 순흥안씨 사람들은 풍기군에 거주하면서, 소수서원 건립 당시에도 문성공의 초상을 봉안하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41) 정몽주는 영천 출신으로 당시 경상도 관찰사 鄭彦懋이 정몽주의 6세 외손이었다(김학수, 「조선후기 영천지역 사림과 임고서원」, 『포은학연구』 6, 포은학회, 2010, 128면). 개성은 정몽주가 거주하던 곳으로 송양서원은 정몽주의 집터가 있는 善竹洞에 건립되었다.

있던 것이 인연이 되어 易東書院에 제향이 되었고, 충청도 최초의 서원인 象賢書院에는 보은 출신인 冲庵 金淨(1486~1521)이,⁴²⁾ 공주의 忠賢書院에는 공주 출신인 徐起가 각각 제향되었다. 순천의 옥천서원에는 그 지역에 유배를 왔었던 김굉필이 제향되었고,⁴³⁾ 부여 의열서원의 석탄 이존오, 회덕 송현서원의 奎庵 宋麟壽(1499~1547), 김정, 守夫 鄭光弼(1462~1538) 등이 이러한 사례에 속한다.

이처럼 서원에 제향 인물이 지역적 연고를 가진 인물이었다는 점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조선의 서원제도가 ‘사우’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家廟의 관습에서 시작된 사우는 오랫동안 ‘사회적 교화기구’로 자리 잡고 있었다.⁴⁴⁾ 지방관들은 鄉風 교화를 목적으로 각 지역에서 忠 또는 孝와 관련된 인물들을 선별하여 ‘선양’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그 대표적인 곳이 부여에 義烈祠를 들 수 있다. 의열사는 1575년에 부여 현감 洪可臣(1541~1615)이 건립한 사우이다. 홍가신은 부여 현감으로 부임한 후 여러 가지 기록 자료들을 통해 제백과 성충, 이존오 등을 제향인물로 선정하였다.⁴⁵⁾ 홍가신은 사우를 건립하고 그 옆에 부여 유학들을 공부시킬 공간인 ‘觀善堂’을 건립하였다.⁴⁶⁾ 의열서원은 ‘의열사’와 ‘관선당’이 합해지면서 사액을 받은 서원이었다. ‘사액’을 통해 ‘서원제도’에 편입된 대부분의 ‘사우’는 ‘의열사’의 사례처럼 ‘서원’과 결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것은 ‘서원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었다. ‘서원제도’는 ‘향촌교화 시스템’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향촌교화 작업’의 임무를 완수할 ‘지방 양반 선별 시스템’으로도 작용했다. 이것은 조선의 ‘서원제도’가 가지는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명종 4년에 이황에 의해 제기된 사액 제도는 조선 정부의 서원제도 정책에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향촌 사회에 서원제도를 안정적으로 보급하려고 ‘사액 정책’을 활용하였다. 정부의 ‘사액 정책’을 통한 ‘서원제도’ 홍보는 큰 효과

42) 김정은 보은 출신으로 그의 처가는 보은과 가까운 金山이었다(『중종실록』 권41, 15년, 11월 무오). 또, 그는 중종 때 폐출된 왕후 신씨의 복위를 주장하고, 朴元宗 등을 追罪할 것을 상소했다가 報恩의 畝驛에 유배당한 이력도 있었다(『大東野乘』, 「己卯錄補遺」 卷上 참조).

43) 김굉필은 순천에 유배를 왔었는데, 옥천서원 옆에는 그가 매계 조위와 함께 모은 돌로 만들었다는 비석이 있고 거기에 ‘임청대’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임청대는 이황의 친필을 새긴 것이다.

44) 柳洪烈, 「朝鮮祠廟發生에 對한 一考察」, 『진단학보』 5, 진단학회, 1936.

45) 柳成龍, 『西厓集』 권17, 「義烈祠記」.

46) 안다미, 「부여현 사족의 서원활동과 ‘原鄉之家’의 의미」, 『역사와 담론』 89, 호서사학회, 2019, 48면.

를 발휘하여, 소수서원 건립 이후 17세기 전까지 새롭게 건립된 서원(원우 제외)의 수는 대략 92개소이다. 이 중 16세기에 사액을 받은 서원은 대략 35개소였다. 그리고 이들 35개소 중 대략 32개소가 선조~광해군 시기 사액을 받은 서원이었다.

Ⅳ. 임란 이후 ‘서원제도’ 정비사업

선조 25년(1591) 4월에 시작된 壬辰倭亂은 이듬해인 선조 26년(1592) 4월에 휴전 협상을 맺으면서 소강상태를 가졌다. 전에 없던 대규모 전란을 경험한 조선 정부는 군량미를 축적하고, 무인을 양성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조선 정부는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서원제도 재정비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시기 ‘서원제도 재정비 사업’의 주된 방향은 불필요한 지출을 정리하여, 군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실제로 선조 26년(1592) 8월에 비변사에서는 ‘서원제도’에 관한 문제점으로 官奴婢를 투숙 시키는 일, 騎船軍을 분급하는 일, 屯田과 屬公田을 끊어 주는 일 등을 지적하면서, 사액을 받지 않은 서원을 대상으로 소속된 곡물과 잡물을 살펴서 군량에 충당할 것을 건의하였다.⁴⁷⁾

이처럼 조선 정부는 ‘군량’ 확보를 목적으로 불필요한 서원을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조선 정부의 ‘서원 정리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불필요한 지방재정 지출 방지’였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서원제도’는 ‘지방통치 시스템’ 중 하나였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일정 부분 운영비용을 지원해 주었다. 실제로 지방 정부에서는 서원의 春秋享祀에 드는 祭需의 일부를 지원해 주었다.⁴⁸⁾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 정부의 ‘서원제도’에 대한 ‘선전’은 꽤 효과를 발휘하여, ‘서원제도’에 대한 ‘지방 양반’들의 관심이 높아져 갔다. 그 결과 서원건립에 참여하는 ‘지방 양반’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서원의 수 역시 증가하게 되었다. 실제로 임진왜란 이전까지 전국적으로 건립된 서원의 수가 대략 61개소(사우 제외)였는데, 이중 약 43개소(사우 제외)가 ‘서원제도 홍보 기간’인 ‘선조 초~임진왜란 이전’ 시기에 건립된 것이었다.⁴⁹⁾

47) 『선조실록』 권41, 26년, 8월 갑신.

48) 『광해군일기』[중추본] 권19, 1년, 8월 기유.

49) 서원의 건립 수를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보면 경상도(19), 전라도(8), 충청도(6), 황해도(5), 경기도

당시 조선 정부의 ‘서원 정리 사업’은 ‘未賜額 書院’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선조 28년(1594) 7월에 선조는 武學을 세운다는 명분과 ‘文弊’의 심화를 이유로 ‘긴요하지 않은 서원’(미사액서원)을 우선 혁파할 것을 전교한 것⁵⁰⁾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선조가 지적한 ‘文弊’라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조가 지적한 ‘문폐’라는 것은 이른바 ‘學派’의 형성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문제는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인조 22년(1644) 8월에 慶尙監司 林壇(1596~1652)에 의해 서원의 근본적인 폐단 중 하나로 지적되었다.

서원이 ‘문폐의 근원지’가 된 결정적 이유는 ‘서원제도’의 ‘유동성’에 있었다. 인조 연간에 “서원은 國法으로 통제되지 않는다”고 한 예조의 啓目에서 알 수 있듯이 ‘서원제도’는 ‘국가 시스템’이면서 ‘국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제도였다. ‘서원제도’가 국법으로 규정되지 않았던 이유는 ‘서원제도’가 시행된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조선 정부가 ‘서원제도’를 시행한 가장 큰 목적은 ‘성리학적 이데올로기’를 향촌 사회에 보급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부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원제도’를 통해 ‘지방 양반’들을 ‘선별’하였는데, 이러한 ‘선별 시스템’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 왜냐하면 조선 정부가 ‘선별’하려는 ‘양반’이란 존재 자체가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 계층’들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서원제도’를 통해 ‘선별’된 ‘지방 양반’들 역시 필연적으로 유동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음을 말하기도 한다. 그들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언제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지위가 변동할 수 있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었다. 이때 ‘지방 양반’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지위 중 하나는 국가 정책 이데올로기 보급을 위한 ‘위임자’라는 타이틀이었는데, 이것은 ‘서원제도’ 안에 편성되었을 때 유지될 수 있었다. 따라서 ‘지방 양반’들은 자신들이 계층적 지위를 지켜내기 위해 일련의 노력을 시행했는데, 이러한 노력은 ‘서원제도’ 안에서 발현되었다. 서원제도 안에서 지방 양반들이 하는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일종에 ‘서원 운동’이라고 볼 수 있었다.⁵¹⁾

(4), 평안도(1) 순으로 여전히 경상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지만, 다른 시기와 비교해 보면 전라도, 충청도, 황해도, 경기도, 평안도 지역까지 서원의 수가 늘어나고 있었다.

50) 『선조실록』 권65, 28년, 7월 계미.

51) 여기서 ‘운동’이란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힘쓰는 일, 또는 그러한 활동”(네이버 국어사전)을 말한다. 예컨대, ‘노동 운동’이란 “사회 노동자 계급이 자신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개하는 조직적인 활동이다.”(표준국어대사전) 본 글에서는 이와 같은

서원의 제향 인물을 중심으로 형성된 '학파'라는 개념은 지방 양반들의 '서원 운동'의 결과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지방 양반'들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제향 인물을 중심으로 '공동의 계승 의식'을 만들어내는 작업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학파'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것이다. 지방 양반들이 제향인물을 중심으로 '공동의 계승 의식'을 만들고, 이것을 통해 지위를 확보하려 했던 결정적 배경에도 역시 서원정책이 있었다. 제향 인물의 여부는 조선 정부가 '사액'을 내려주는 결정적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음을 상기한다면, '지방 양반'들이 '제향 인물'을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기반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들이 심화되면서 폐단으로 나타난 것이 선조가 지적한 '문폐' 현상이었다.

임란 직후 진행된 '서원 정리 사업'은 선조 30년(1597)에 丁酉再亂이 일어나면서 잠시 중단되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두 차례의 전란은 토지를 황폐하게 만들고 농민층을 흩어지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 양반들의 移去현상을 초래했다. 兩亂 이후 '지방 양반'들의 이거 현상이 급증하자 조선 정부는 향촌 사회 질서 확립을 위해 새로운 '지방 양반'들을 '재선별'할 필요가 있었다. 정유재란 이후 조선 정부의 '서원제도 재정비 사업'의 주된 목표는 '이거'한 '지방 양반'들을 '서원제도'를 통해 '재편성' 하는 작업에 있었다. 정부는 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풍기, 예안 등과 같이 서원이 중건되거나, 평안북도 熙川처럼 서원이 새롭게 건립된 군현에 蔭官 출신의 지방관들을 遞差하고, 그 자리에 문관 출신들을 임명하였다.⁵²⁾

이처럼 조선정부가 특별히 문관출신 지방관들을 임명한 이유는 무엇일까? 중앙 정부 입장에서는 '향촌사회 질서 재정립'을 담당할 지방관들이 '성리학적 이데올로기'를 잘 이해하고, 이것을 통해 지방 양반들을 교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을 필요가 있었고, 이런 면에서 문관 출신 지방관들이 무관이나 음관 출신보다 상대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은 임란 직후 국방을 목적으로 서원을 정리하고 '武學'으로 대체하려 했던 정부의 정책과 대비되는 것이었다.⁵³⁾

개념으로 '서원 운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지방 양반들의 '서원 운동'이란 예컨대, 『鄕案』 작성, 鄕約 보급 운동, '서원건립 운동', '통문활동' 등 서원을 통한 전반적인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후속 논문에서 별도로 다룰 예정이다.

52) 『선조실록』 권115, 32년 7월 무오; 『선조실록』 권129, 33년, 9월 기묘; 『선조실록』 권178, 37년 9월 기미.

이렇게 임명된 지방관들은 각 군현의 특징에 맞추어 ‘서원제도 재정비 사업’을 진행하였다. 예컨대, 양란 이후가 되면 황해도 지역에는 주자를 제향하는 서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표 1〉 임란 직후 주자를 제향한 서원

지역이름	군현이름	서원이름	건립연도	사액연도	제향인물
경상도	성주	川谷書院 [迎鳳書院]	중종 23년 (1528)	선조 6년 (1573)	朱子, 叔程子, 金宏弼
충청도	공주	忠賢書院 [孔巖書院]	선조 14년 (1581)	인조 2년 (1624)	朱子, 李存吾, 徐起 李穆, 成悌元
황해도	해주	紹賢書院 [隱屏精舍]	선조 19년 (1586)	광해군 2년 (1610)	朱子, 李珥
	연안	飛鳳書院	선조 29년 (1596)	숙종 8년 (1682)	朱子, 成忠, 李珥, 金宏弼, 成渾
	황주	白鹿書院	선조 21년 (1588)	경종 1년 (1721)	朱子, 李珥
	신천	正源書院	선조 21년 (1588)	숙종 36년 (1710)	朱子, 趙光祖, 李滉, 李珥
	안악	鷲峯書院	선조 22년 (1589)	숙종 3년 (1677)	朱子, 李珥
	장연	龍巖書院	선조 22년 (1589)	경종 1년 (1721)	朱子, 李珥
	송화	道東書院	선조 38년 (1605)	숙종 25년 (1699)	朱子, 趙光祖, 李滉, 李珥
	은율	栗谷書院	광해군 5년 (1613)		朱子, 李珥, 金宏弼

출전: 『연려실기술』 별집 4권, 「祀典典故」; 『俎豆錄』(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참조.

비고: []안의 명칭은 건립 당시 명칭이다.

위 표를 보면 천곡서원과 충현서원을 제외하고⁵⁴⁾ 주자를 제향한 모든 서원은 紹賢

53) 『선조실록』 65권, 28년, 7월 계미.

54) 천곡서원이 주자를 ‘주향’으로 한 시기는 임란 이후 서원 중수 작업을 마치고 사액을 받은 후

書院⁵⁵⁾을 중심으로 이른바 황해도 서쪽 지역 즉, 해주 인접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⁵⁶⁾ 황해도 지역에 주자를 제향하는 서원이 늘어난 배경에는 제향 인물을 통해 지방 양반들을 '교화'하려고 했던 중앙정부의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 특히 황해도는 경상도와 충청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리학 보급에 공헌하였으면서 지역을 대표 할만한 인물이 적었다. 여기에 황해도 지역에 처음 건립된 서원인 '소현서원'에서 '주자'를 제향한 경험이 있었고, 이것은 인접 지역 거주 양반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상도 지역에서는 '의병 경력'이 있는 '지방 양반'들이 '서원제도'를 통해 '재선별'되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경상도 지역에서는 '지방 양반'들을 중심으로 招募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의병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은 '경상우도 지역'이었다. 대표적 인물이 來庵 鄭仁弘(1535~1623), 雪壑 李大期(1551~1628),⁵⁷⁾ 嶧陽 文景虎(1556~1619),⁵⁸⁾ 陶村 曹應仁(1556~1624), 竹庵 許景胤(1573~1646)⁵⁹⁾ 등이 있었다. 이처럼 의병에 참여한 지방 양반들은 '향촌사회 교화'

부터였다. '충현서원'은 사액 이전의 이름이 '공암서원'이었는데, 충현서원의 주자 초상은 1577년 孤靑 徐起(1523~1591)가 1577년에 남경에서 직접 사서 온 것이다.

- 55) 牛溪 成渾(1535~1598)과 이이의 제자인 해주 지방 양반 朴汝龍(1541~1611), 趙光玪(1553~미상) 등이 이이의 친구였던 재령군수 崔堧(1539~1612)의 도움을 받아 사우인 朱子祠를 완공하고, 은병 정사와 합사하여 '석담서원'을 건립하였다. 이후 이이를 석담서원에 추가 배향하면서 광해군 1년에 '소현'이라는 사액을 받아 오늘날 소현서원이 되었다(이경동, 「조선시대 해주 소현서원의 운영과 위상」, 『韓國思想史學』 61, 한국사상사학회, 2019, 245면).
- 56) 위 표에 언급된 서원은 임란 직후에 주자를 제향한 서원이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19세기까지도 주자를 제향한 서원은 황해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에 각각 1개소가 건립되는 것이 전부였다.
- 57) 이대기는 아우 李大約, 지방 양반 李胤緒(1574~1624) 등과 의병을 일으키기로 약속하고 관내에 모집 통문을 돌렸으며(李大期, 『雪壑集』 권2, 「壬癸日記」, “初八日. 與弟大約及李胤緒. 議謀聚鄉兵 初十日. 發文諭境內.”), 濯溪 全致遠(1572~1596)이 초계에서 처음 의병을 일으키자 그와 함께 성내에서 거병할 것을 논의하였다(李大期, 『雪壑集』 권2, 「壬癸日記」, “十三日. 入郡城與全致遠約同心舉義, 又通諭一邑, 收合數千人分掌內外. 以應郭再祐.”).
- 58) 문경호는 조응인 등과 같이 합천 야로현 출신인 정인홍이 倡義할 때 그를 따라 함께 의병 활동에 참여하였다(『亂中雜錄』 권1, 壬辰(1592)上, 5월, “前掌令鄭仁弘舉義兵討賊, 仁弘慶尙道陝川人, 初官軍潰散, 賊勢長驅, 直指京城, 大駕西巡, 仁弘與前佐郎金沔, 朴惺郭趨及其門徒共謀義舉, 通文于列邑, 士民聞者莫不思奮, 以門下河渾, 曹應仁文景虎權養等參佐, 分定有司使之聚兵, 又以朴而章, 文弘道任軍糧募辦.”).

의 임무를 맡기기에 적임자였다. 의병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 救國을 위해 싸웠다는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런 감정은 ‘지방 양반’들 사이에만 형성된 것이 아니라 함께 싸운 향촌민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었다. 여기에 경상도 지역의 경우 ‘의병 활동’에 참여한 대부분 지방 양반들이 지역에 오랫동안 기반을 두고 거주해 오던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의병 경력’의 지방 양반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향촌 사회에서 기반과 ‘의병 활동’을 통한 명망이 더해져 鄉論을 이끌어 나가기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었다.

경상도에 비해 충청도 지역에서는 인접 지역 사이로 ‘지방 양반’들의 移去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충청도 지역 이거 양반들은 대부분 임란 이후 이거 해 온 사람들인데, 이렇게 이거해 온 지방 양반들은 외가 혹은 처가의 토지를 기반으로 자리 잡아갔다. 대표적 사례가 부여현이다. 임란 이후 부여현에 이거 해 온 대표적 지방 양반들로 는 학생 俞大稱(1565~1634), 진사 柳峯·생원 柳堃 형제, 학생 閔汝俊(1539~1599), 黃愼(1560~1617), 李敬輿(1585~1657) 등이 있다. 이 중 황신과 이경여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선조 30년(1579)에 일어난 ‘이몽학의 난’에서 공로를 세워 ‘청난공신’으로 책봉되었다. 부여현 이거 양반들은 외가와 처가로부터 받은 토지와 공신으로서 받은 재정 지원을 기반으로 향촌 사회에서 자리 잡아갔다.⁶⁰⁾

각 군현의 지방 정부는 서원제도를 통해 이러한 지방 양반들을 ‘선별’해서 ‘향촌 사회 질서 정립’의 임무를 부여하였다. 지방 정부가 ‘선별’한 지방 양반들은 ‘서원제도’ 안에서 향촌교화 작업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향촌교화 질서 책임자’라는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서원 운동’을 진행했다. 특히 1623년에 일어난 ‘仁祖反正’, 이듬해인 인조 1년(1624)에 일어난 ‘李适(1587~1624)의 난’, 인조 5년(1627)에 일어난 丁卯胡亂과 인조 14년(1636)에 일어난 丙子胡亂 등 일련의 대외적 사건들은 ‘지방 양반’들에게 사회적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중대한 과제들을 안겨 주었다. ‘지방 양반’들의 ‘서원 운동’이 격렬해지자, 15세기 이후부터 제기되었

59) 허경운은 임진왜란 당시 모친을 모시고 함양으로 피난을 했다가, 왜적들이 수로왕릉을 도굴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의병을 소집하여 관병들과 함께 싸웠다(허경운, 『竹巖集』 권2(附錄), 「行狀」, “壬辰倭狹至, 奉母避兵于咸陽, 雲峯採拾爲養, 未嘗之人服其孝, 聞賊掘首露王陵募壯士.”).

60) 이렇게 성장한 ‘지방 양반’들은 18세기 이후가 되면 浮山書院을 건립하고, 이곳을 통해 『향안』을 중수하고, 자신들을 ‘原鄉之家’로 분류하여 정체성을 확보해 갔다(안다미, 「부여현 사족의 서원활동과 ‘原鄉之家’의 의미」, 『역사와 담론』 89, 호서사학회, 2019 참조).

던 서원제도의 문제점들이 다시 불거지기 시작하였다. 인조 22년 8월에 경상감사 임담이 제기한 ‘제향 인물을 중심으로 한 私黨현상’과 ‘서원이 난립하는 현상’⁶¹⁾에 대한 두 가지 문제는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임담이 지적한 두 가지 문제 중 당시 조선 정부가 좀 더 시급한 과제로 인식한 것은 후자에 관한 부분이었다. 임담이 지적한 현상은 이른바 ‘書院濫設’ 현상을 말한다. ‘서원남설’ 현상이 가져오는 근본적 폐단은 ‘지방재정 분배의 효율성’과 관련된 것이었다. 특히 ‘편액’과 ‘서책’만 하사하던 ‘사액서원’에 ‘면세권’이 부여되면서, 이것을 제한하는 작업과 맞물려 ‘서원남설’ 현상은 심각한 폐단으로 제기되었다. ‘서원남설’ 현상에 대해 임담이 제시한 대안은 ‘서원건립 허가제’였다. 그는 중국의 사례를 들면서, 우리도 앞으로 건립할 사당에 대해서 一道의 선비들과 의논하고, 本官(관찰사)에게 書狀을 바쳐 날날이 감사에게 보고하고, 다시 조정에 상주하여 비준을 얻어야만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⁶²⁾

조선 정부는 임담의 제안을 받아들여 예조판서 李植(1584~1647) 등은 “지금부터 새로 창설하는 곳에 대해서는 모두 本曹(예조)에 보고하여 조정에서 의논하여 허가를 내린 다음 창설하도록 할 것”⁶³⁾을 주지시키도록 회계하였다. 그러나 임담이 제안한 ‘서원건립 허가제’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서원남설’ 현상은 효종 8년(1657)에 忠淸監司 徐必遠에 의해 또 제기되었다. ‘서원건립 허가제’는 서원건립 활동에 대한 제제를 통해 서원의 수를 정리하려는 의도에서 시행되었다. ‘서원건립 허가제’는 겉으로 보면 ‘서원제도’를 중앙정부가 통제하려는 수단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서원제도’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허락하는 ‘사액제도’ 시스템과 별 다른 차이가 없었다. 여기에 ‘서원건립 허가제’는 ‘법률’로 정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강제성’이 적은 정책이었다. 이런 이유로 효종 8년 서필원에 의해 ‘남설’ 문제가 제기 되고,

61) 『인조실록』 권45, 22년, 8월 기미, “逮至萬曆以後, 廟宇之作, 歲益浸盛, 比邑相望.”

62) 『인조실록』 권45, 22년, 8월 기미, “中朝則儒先, 名臣合在祀典者, 督學按察, 必先報聞, 然後方許立祀, 今後係于新創祠宇, 則一道士林通議之後, 呈書本官, 枚報監司, 轉稟朝廷, 得準乃許, 俾無私自乖爭之弊.”

63) 『인조실록』 권45, 22년 8월 기미, “下禮曹, 判書李植等回啓曰, 書院之設, 初爲待學問靜修之士, 而其立祠尊祀者, 則必以一時所明知, 可爲師表者當之, 今則不然, 爲士者不事學問, 所祀者或非其人, 祠院雖多, 斯文益晦, 誠可寒心, 今此狀啓所論, 實爲有見, 自今新設處, 皆令轉報本曹, 通議朝廷, 公論準許然後, 創設爲當.”

成命(丁酉成命)을 통해 ‘서원건립 허가제’의 시행을 재차 권고했지만, 이 문제는 18~19세기까지 계속해서 제기되었다.

요컨대, 양란(임진, 정유) 이후 조선 정부는 ‘서원제도 재정비 사업’을 시행하였다. 중앙정부에게 ‘서원제도 재정비 사업’을 위임받은 지방 정부는 향촌 사회 질서 재정립의 위임자인 ‘지방 양반’들을 ‘재선별’하는 작업에 심혈을 기울였다. 지방 정부에 의해 ‘재선별’된 ‘지방 양반’들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이러한 노력은 ‘서원 운동’으로 나타났다. ‘지방 양반’들의 ‘서원 운동’은 ‘서원남설’과 ‘제향 인물’을 중심으로 한 私黨 현상을 초래했다. 이 중에서도 중앙정부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서원남설’ 현상을 해결하는 것인데, 이것은 ‘재정’과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이다.

V. 맺음말

국초부터 조선 정부는 성리학 기반의 질서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서원’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특히 종종 연간이 되면 향풍 교화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종종 37년 행부사와 어득강은 각 군현에 중국의 백록동서원과 같은 ‘서원제도’를 정립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조선 정부는 어득강의 제안을 수용하여 惡鄉으로 낙인찍혔던 풍기에 가장 먼저 ‘서원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여기에 공헌한 인물은 풍기군수 주세붕이었다. 주세붕은 향풍교화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풍기의 대표적 儒賢이었던 安珣을 主享으로 하는 祠宇를 건립하였고, 그 옆에 學舍를 이긴 해 풍기 지방 양반들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교화기구’인 ‘사우’와 ‘강학기구’인 ‘서원’이 결합된 ‘지방통치 보조기구’로서 서원이 처음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白雲洞書院’이었다.

주세붕은 ‘백운동서원’을 건립한 후 이곳을 통해 향풍 교화 작업을 보좌해 줄 ‘지방 양반’들을 ‘새롭게 선별’하고, 그들에게 ‘자율성’을 보장해 주었는데, 이것은 주세붕 개인의 성향 때문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서원 정책을 통해 진행된 것이었다. 풍기 군을 시작으로 조선 정부는 ‘향풍 교화’와 ‘지방 양반 선별작업’의 목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서원제도’를 향촌 사회에 안정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명종 4년 풍기군수 이황이 제안한 '사액 제도'는 '서원제도'의 이점을 홍보하기에 적합한 명분을 부여해 주었다. 조선 정부는 '사액 제도' 중 '현판 하사'와 '서책 보급'이라는 부분을 수용하여, 국왕의 권위와 교화 정책을 향촌 사회에 보여주고자 하였고, '서원제도'가 국왕의 인증을 받은 이른바 '공인시스템'임을 홍보하였다.

'사액 제도'와 함께 '서원제도'의 또 다른 홍보 수단은 '자율성 보장'이라는 부분이였다. 조선 정부는 '서원제도'가 국가 시스템이면서 그 속에서 국가가 공인한 '자율성'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그 결과 16세기에 접어들면 새롭게 건립된 서원의 수가 대략 96개소(원우 제외) 이상이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경험한 정부는 늘어난 서원의 수를 정리하여, 지방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의 '서원제도 재정비 사업'은 처음에 미사액 서원을 정리하는 일에서 시작되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고, 정유재란을 맞이하였다.

정유재란 이후 '지방 양반'들의 移去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향촌 사회 질서를 재정립할 새로운 '지방 양반'들을 '재선별'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정부의 '서원제도 재정비 사업'은 지방 정부의 주도로 군현별로 차이를 두고 진행되었다. 예컨대, 황해도는 주자를 제향하는 서원에 대한 사액을 통해 '지방 양반'을 교화하는 작업을 시행했고, 경상도는 '의병 경력'의 '지방 양반'들을 통해 향촌 사회 교화 작업을 시도했으며, 충청도는 이거 양반들을 통해 이런 작업을 시도했다. 이렇게 재편성된 '지방 양반'들은 '국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서원제도'의 독특한 '특성' 즉, '서원제도의 유동성' 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 사회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 일련의 노력을 단행하는데, 이러한 노력을 지방 양반들의 '서원 운동'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방 양반'들의 '서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16세기부터 제기된 문제들이 17세기 이후 다시 불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제향 인물을 중심으로 한 私黨현상'과 '서원남설 현상'이었다. 이 두 가지 중 후자의 경우 지방재정과 관련된 문제라서, 정부에게는 좀 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이 '서원건립 허가제'였다. 그러나 이 대안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결국 18~19세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제기되었다.

참고문헌

『亂中雜錄』

『輿地圖書』 下(『한국사료총서』 20 수록)

『大東野乘』

『武陵雜稿』

『西厓集』

『성호사설』

『연려실기술』

『雪壑集』

『조선왕조실록』

『조두록』(국립중앙도서관 소장)

『竹巖集』

『退溪集』

미야지마 히로시 저, 노영구 역, 『미야지마 히로시의 양반』, 너머북스, 2014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이수환, 『조선후기 서원연구』, 일조각, 2001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정순목, 『한국서원 교육제도 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1979

김종식, 「陶山書院의 이념과 그 전개」, 『안동학연구』 11, 국학진흥원, 2012

김학수, 「조선후기 영천지역 사림과 임고서원」, 『포은학연구』 6, 포은학회, 2010

민병하, 「조선 시대의 서원 교육」, 『대동문화연구』 17,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83

송준식, 「남명학과 서원건립 운동」, 『남명학연구』 15, 남명학연구소, 2003

신동훈, 「16세기 서원 사액과 국가의 정책」, 『역사와 현실』 98, 한국역사연구회, 2015

안다미, 「조선후기 부여 浮山書院의 건립과 활동」,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2014

_____, 「부여현 사족의 서원활동과 ‘原鄉之家’의 의미」, 『역사와 담론』 89, 호서사학회, 2019

柳洪烈, 「朝鮮祠廟發生에 對한 一考察」, 『진단학보』 5, 진단학회, 1936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 정책과 서원의 설립 실태」, 『역사학보』 181, 역사학회, 2004

Edward W. Wagner, 「李朝 士林問題에 관한 再檢討」, 『전북사학』 4, 전북대 사학회, 1980

이경동, 「조선시대 해주 소현서원의 운영과 위상」, 『韓國思想史學』 61, 한국사상사학회, 2019

이태진, 「士林과 書院」, 『한국사』 12, 국사편찬위원회, 1984

최완기, 「조선조 서원 성립의 제문제」, 『한국사론』 8, 국사편찬위원회, 1980

The Process to Distribute 'The Private Academy System'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Ahn, Da-mi

'The private academy system' of the Chosŏn Dynasty which combines 'a shrine', space for rural community enlightenment, with 'a private academy' space for 'cultivating talent' was created by the Chosŏn government's effort to achieve a political goal of distributing confucian ideology to rural communities. The private academy system of the Chosŏn Dynasty was the 'organization' for enlightening rural communities and selecting talent to distribute 'confucian ideology' to society. 'Talent' selected by Chosŏn government's political plans means 'local noblemen.' In return for guarantee of 'autonomy' from the Chosŏn government, 'local noblemen' had to be responsible for roles and duties to assist the local governments to distribute and realize its policies to rural communities. The space that a series of these tasks was arranged was the very 'private academy.' 'The private academy system' of the Chosŏn Dynasty was closely related with 'noblemen' who was the 'social class.' The Chosŏn government already tried to utilize 'private academies' as space to 'select' 'local noblemen' from the beginning. And 'the private academy system' was operated with 'flexibility' which was not prescribed by 'the national law' under this purpose.

In these characteristics of 'the private academy system', 'local noblemen' had to make a ceaseless effort to stick to their 'autonomy' granted by the government and secure their social status called the mandator of 'establishing order of rural communities'. A series of 'noblemen's efforts appear in 'the private academy system', which can be described as local noblemen's 'private academy movement.' By the way, Local noblemen's 'private academy movement' set another task to the Chosŏn government. It is the 'Private Academy Namseol' phenomenon and the 'Confucians Shrined-centered privatization (私黨)' phenomenon that were raised by Gyeongsang Governor Lim Dam on August in the 22th year of the reign of Injo of Chosŏn. Among them, the most urgent issue before the Chosŏn government was the 'Private Academy Namseol' phenomenon related to

efficiency of local financial allocations. Therefore, Lim Dam suggested 'the license system of building private academies' to solve this problem but it was not very effective. In the end, this problem continued to the 19th century and was barely solved after so-called 'work to abolish private academies' was executed in the 7th year of the reign of Gojong of Korea.

Key Words : Private academy(書院), Private academy system, Rural community enlightenment, local noblemen, Private academy movement